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 20090100321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9.07.07 . www.hairpalace.co.kr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18.12.10 .

[헤어 팰리스]

정 보 공 개 서

[로얄파트너스(주)]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18. 3. 31.

[로얄파트너스(주)]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67(잠실동) 2층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02-2655-0972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2)-2655-0973

[가맹본부의 대표주소]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67(잠실동 250-9) 2층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1.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로얄 파트너스(주)	헤어팰리스 외 1개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67(잠실동250-9), 2층			
	설립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 3.27	2011. 7. 7	2011. 8. 12	양재일, 방영웅	02-2655-0972	02-2655-0973
	법인등록번호	110111-4643303		사업자등록번호	120-87-71192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사용 브랜드	주 소			
대표이사	로얄파트너스 (주)양재일	헤어팰리스 외1개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67(잠실동250-9), 2층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9.3.27~현재	양재일	02-2655-0972	02-2655-0973		
관계	상호/이름	사용브랜드	주 소			
대표이사	로얄파트너스 (주)양재일	헤어팰리스 외1개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67(잠실동250-9), 2층			
			사업(경영)기간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1.07.07~현재	방영웅	02-2655-0972	02-2655-0973		

3.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헤어팰리스	“검소함과 화려함이 어우러진 위엄있고 당당한 아름다움”
상 호	Hair Palace OO점	
상표(서비스표)	 Hair Palace TOTAL BEAUTY SALON	서비스표 출원번호:41-2010-0022449 41-2010-0022450
광 고	-	
그 밖의 영업표지	-	

4.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 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있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헤어펠리스 외 1개	2012.02.29.	서울시양천구목4동807-5호 가인빌딩4층	김홍수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 순이익
2015년	3,005,811	1,638,647	1,367,164	2,984,685	294,657	181,202
2016년	3,298,531	1,762,453	1,536,077	3,028,051	332,958	168,913
2017년	4,386,588	2,660,584	1,726,003	3,601,005	204,098	189,925

그 근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무제표의 근거는 별첨서류로 첨부.]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 헤어펠리스와 에이치스타일 브랜드별 매출산정이 어려워 통합한 매출액입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양재일	대표이사	2009.03. ~ 2010.10	펠리스뷰티(주)대표이사	경영총괄
			2011.07 ~ 현재	로얄파트너스(주) 대표이사	경영총괄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방영웅	대표이사	2006.01~2008.4	현대I&S(주) 부장	전산,시스템분석
			2011.07 ~ 현재	로얄파트너스(주) 대표이사	재무, 신사업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17년 12월 31일	2	0	25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헤어펠리스)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경영한 바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양재일 (대표이사)	BMS(주)	다른 가맹본부 [BMS(주)] 사장으로 재직	2007.2.~2009.3	헤어살롱B&G(등록번호: 20080100644)라는브랜드의 미용실 가맹사업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등록만료일
	브랜드의사용	출원:2010.09.01 등록:2012.04.25	출원:제41-2010-0022449 등록:제41-0230-9740000	양재일	2022. 4. 25
	브랜드의사용	출원:2010.09.01 등록:2012.04.25	출원:41-2010-0022450 등록:제41-0230-9800000	양재일	2022. 4. 25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09년 5월1일부터

2. (헤어팰리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팰리스뷰티 (주)	헤어 팰리스	전성실, 양재일	2009.05.01 ~ 2010.10.04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10-2번지
아름네트웍스 (주)	헤어 팰리스	김홍수	2010.10.05 ~ 2012.02.29	서울시 양천구 목4동 807-5번지
로얄파트너스 (주)	헤어 팰리스	양재일, 방영웅	2012.03.01 ~ 2013.03.15	서울시 양천구 목1동 923-14 드림타워1401호
로얄파트너스 (주)	헤어 팰리스	양재일, 방영웅	2013.03.16 ~ 2013.03.20	서울시 마포구 노고산동 31-157 에버빌딩 5층
로얄파트너스 (주)	헤어 팰리스	양재일, 방영웅	2014.03.21. ~ 2015.07.09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노고산동 31-21) 4층
로얄파트너스 (주)	헤어 팰리스	양재일, 방영웅	2015. 07. 10 ~ 현재	서울시 송파구 삼전로 67 (잠실동 250-9) 2층

3. [헤어팰리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헤어팰리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이미용	미용실

4. 바로 전 3년간 사업 연도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헤어펠리스)

(단위: 개)

지역	2015.12.31.			2016.12.31.			2017.12.31.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12	10	2	15	12	3	13	10	3
서울	3	1	2	4	1	3	4	1	3
부산	-	-	-	1	1	-	-	-	-
대구	3	3	-	3	3	-	3	3	-
인천	2	2	-	2	2	-	1	1	-
광주	1	1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1	1	-	1	1	-
경기	-	-	-	-	-	-	1	1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1	1	-
전남	-	-	-	-	-	-	-	-	-
경북	-	-	-	1	1	-	1	1	-
경남	3	3	-	3	3	-	1	1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15	12	1	0	3	0	10	-2
2016	10	4	1	1	0	12	+2
2017	12	2	3	1	0	10	-2

6. 헤어펠리스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15.12.31.	2016.12.31.	2017.12.31.
가맹본부	로얄파트너스(주)	H.style	20090100322	서비스	81/3	100/3	110/2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2017년 가맹점 연간 평균 매출액의 산정은 10개의 가맹점 중 범물점등 4개의 매장을 제외한 매출이 확인된 6개 매장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지역	2017년 말 가맹점 수	2017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상한		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당	상한	면적 3.3㎡당	하한	면적 3.3㎡당	
전체	10	332,511	9,789	701,577	22,261	86,771	2,556	
서울	1	해당사항없음						5개미만
부산		해당사항없음						
대구	3	해당사항없음						5개미만
인천	1	해당사항없음						5개미만
광주		해당사항없음						
대전		해당사항없음						
울산	1	해당사항없음						5개미만
세종		해당사항없음						
경기	1	해당사항없음						5개미만
강원		해당사항없음						
충북		해당사항없음						
충남		해당사항없음						
전북	1	해당사항없음						5개미만
전남		해당사항없음						
경북	1	해당사항없음						5개미만
경남	1	해당사항없음						5개미만
제주		해당사항없음						

매출액 산정 방식

◆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매출 확인을 위하여 영업관리 프로그램인 비즈메카헤어짱, 다이내믹 CRM 등의 자율이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맹사업자의 평균매출액으로 추정 산정 하였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개별가맹점주의 서비스 품질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로얄파트너스 주식회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지역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제공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9. 광고·판촉 지출 내역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제외]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79,394	79,394	-	손익계산서기준
광고					-	
판촉					-	

● 위 금액은 로얄파트너스(주)의 2017년말 기준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광고선전비 및 판매촉진비의 내역이며, 이 금액은 로얄파트너스(주)의 「헤어펠리스」, 「H-STYLE」 브랜드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소요된 총 비용으로 각 브랜드 별 금액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에, 「헤어펠리스」 만을 위해 소요된 광고 및 판촉 비용은 이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10. 가맹금 예치 기관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업은행 장한평지점 >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부서	주소	전화번호
기업은행	장한평지점	서울시 성동구 천호대로 436(용답동)	02-2249-3220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가맹희망자 예치신청서 가맹본사 제출
- 2) 가맹본사 해당은행에 예치신청서 제출
- 3) 가맹희망자 해당은행에 예치금 입금
- 4) 가맹희망자 해당은행에서 예치확인서 수령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해당사항없음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헤어팰리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유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일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2,000]				
계약금	5,000	선수금 납입계약체결 후 2일 이내	본 계약 미체결시 2주 이내에 반환함.		가맹계약을 하면 보증금으로 대체
영업포지의 사용권 부여에 대한 댓가	22,000	계약 체결 후 승인심사일 이내	승인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시 계약 해지		

2) 계약이행 보증금은 500만원 입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27,0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27,000
가입비	22,000
보증금	5,000(부가세 제외)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당 금액	지급 기한	비고
총계		[73,700 ~ 99,000]	3,685 ~ 4,950		
필수설비(정착물)	협력업체	2,200 ~ 16,500	110 ~ 825	설치 1일 이전	실측 후 시공에 대한 실비정산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33,000(20평/보통형) 44,000(20평/고급형)	1,650(보통형) ~ 2,200(고급형)	내부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50% 완료 후 50%	1,650(평당/ 보통형) 2,200(평당/ 고급형)
기구,장비		16,500	해당없음	물품 공급 1일 이전	
물품재료(라끄 매)의 구입비		11,000	해당없음	계약체결후 물품 입고 이전	
모네시스템 도입비		11,000	해당없음	계약체결후 물품 입고 이전	

- (1). 위 표의 금액은 그 동안의 직영점 개점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2).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하여야 합니다.
직접설치/구매시 3.3㎡당 약(22만원)의 도면비, 감리비가 청구됩니다.
- (3) 점포시설에 따른 제반 인/허가는 개점일 전까지 귀하의 책임과 비용으로 취득 하되 당사에게 조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점포개발팀 (전화:02-2655-0972)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동의 시 본사업의 타당성 승인시 → 오픈링 절차 개시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1.국의 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2.당사와 경영마인드 부합 할 것.	미용사 면허증 취득자
종업원		미용사 자격증 취득자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모네시시스템 1,100만원(부가세포함)에 대한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다. 모네시시스템(가발)업체 (주)앰프파트너스로부터 오픈 1일 전까지 가맹점에 입고 완료한다.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초도물품내역 (주)레스큐헤어로 부터 구입하는 11,000,000원(부가세포함)의 제품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8)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금액(천원)	101,200~12,650	총액의 5%	20%	75%
납부일		계약일	계약일+15일	승인일-2일
비고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는 영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650]				
상표사용료	로얄파트너스(주)	월 1,650	다음 달 1일			
광고 분담금	로얄파트너스(주)	전체광고비x80%/가맹점수	매월 말일까지			대중광고 실시할 경우
교육훈련비	로얄파트너스(주)		교육 실시 5일 이전			교육 필요시 지급
점포환경개선비용		해당없음				가맹사업자의사에 반하는 개선요구 하지 않음
지연이자	로얄파트너스(주)	연18%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월 계속가맹금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시 부담

2) 가맹점 주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제출요청에 대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헤어펠리스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부

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단 양수인이 가맹본부에 가입비, 교육비, 마케팅지원비로 (550만원)을 납부하고 해당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5,500]				
가맹비	해당사항 없음				
추가 교육비 및 마케팅비	5,500	교육 시작 7일 이전	교육 시작 3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신규점의 1/4 수준

3) 경업금지 기간

헤어펠리스의 운영시스템, 디자인등은 당사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연구개발, 노력등을 투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노하우로 계약이 존속중이거나 계약해지 및 종료 후 귀하 또는 귀하가 제 3자로 하여금 당사의 허락없이 귀하의 영업지역에서 1년 동안 당사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영업하거나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경업이 금지되는 업종에 대한 설명은 24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1.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헤어펠리스”임을 알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 번호 등록 (114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귀하가 계약해지,종료시 당사의 영업표지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브랜드를 사용할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일 (200,000)원의 손해 배상금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당사의 귀책 사유 없이 귀하가 위약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당사가 소송 등의 행위를 하여 승소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실비용 및 당사가 실제 지출한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보수를 귀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의 의무 요약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다음 표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보공개서 또는 계약서의 각 항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의 무	계약서 조항	정보공개서(쪽)
1. 계약 체결 전 매장의 보유(임차)	해당 없음	해당사항 없음
2. 계약 체결 전 필요한 물품 등의 구입(임차)	13조1~5항	5~12
3. 입지 선정 및 그 밖에 계약 체결 전 필요한 사항	11조1~3항	5~12
4. 교육·훈련(신규 및 보수)	22조1~5항	28,29
5. 영업 시작	17조	26,27
6. 가맹금 지급(신규)	18조	6
7. 가맹금 지급(영업중)	19조1~3항	12
8. 본사의 영업방침(매뉴얼 포함) 준수	38,40조	15,16,25,26
9. 상표 및 지식재산권 이용·준수	4,5조	2,17
10. 광고 및 판촉 비용 분담	44,45조	26
12. 가맹금 예치(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21조1,2항	6,7
13. 영업에 필요한 물품 구입 및 임차	13조1~5항	8~12
14. 판매가 가능한 상품·용역의 범위	29조1~5항	17
15. 영업이 가능한 고객의 범위	해당 없음	17,19
16. 가격 결정의 제한	30조	18
17. 영업지역	7조1~5항	18,19
18. 매장의 유지·보수	12,41조	25,26
19. 광고·판촉	44,45조	26
20. 손해배상	51조1~3항	27,28
21. 가맹점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격·허가, 종업원 등	15조1~3항	7,8,25
22. 영업 기록 및 보고	42조2,3항	13
23. 가맹본부의 관리·감독	26조1~6항	25,26
24. 계약의 갱신·연장 및 필요한 절차·의무	9조1~3항	20
25. 계약의 종료·해지 및 필요한 절차·의무	50조1~5항	20~22
26. 계약의 수정 및 필요한 절차·의무	57조	23
27. 가맹점운영권 양도	53조	23,24
28. 분쟁해결 절차	60조	27,28
29. 신용 정보나 영업 정보의 제공	해당 없음	16,17

- 1) 서비스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영업 중에 귀하는 당사가 공급하거나 당사가 지정한 미용물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2) 귀하는 물품을 공급받는 즉시 수량 및 품질을 검사한 후 해당일에 그 하자 유무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물품대금은 주문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헤어펠리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를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3. 거래 주선의 대가 내역

당사는 헤어펠리스의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주선하여 특정한 거래상대방이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대가를 수수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단위:천원 , 부가세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산정기준	금액	비고
라끄메	협력업체		거래액의 5~10%	월간 1,100	

4. 신용제공 등 내역

당사는 [헤어펠리스]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프랜차이즈 우대신용 대출	기업은행	최대 3천만원	신용 대출	금융권 확인 신용등급 6등급이상
프랜차이즈 우대신용 대출	우리은행	최대 3천만원	신용 대출	금융권 확인 신용등급 6등급이상

5. 서비스, 상품, 용역, 거래 상대방, 가격결정

1) 가맹점 사업자가 취급하는 서비스의 제한

- (1)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개점 전 당사와 협의한 서비스만 제공해야 합니다. 협의된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게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2) 당사는 귀하와 개점 전 협의한 서비스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의 니즈의 변화, 시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서비스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 (3)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비고
라끄메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프로미		2회 위반: 서면 시정요구	
모네가발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그 외			

2)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의 공급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하는 당사가 제공하는 물품을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인근 헤어펠리스 가맹점 사업자의 물품 부족등 비상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빌려 줄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결정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명 및 권장가격은 상권 및 당사의 서비스 변경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커트	10,000 ~ 25,000	매장내 프라이스 보드 및 메뉴판	2018.2월 기준
펌	45,000 ~ 150,000	"	"
매직	90,000 ~ 200,000	"	"
염색	40,000 ~ 150,000	"	"
기타		"	"

6.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미용전문으로 하는 고급브랜드 가맹사업	헤어펠리스

*. 당사는 헤어펠리스와 H-STYLE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브랜드는 상호 고객층이 달라 동일한 업종으로 보지 않습니다. 헤어펠리스는 품격에 어울리는 당당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고급수요 계층이 주 타겟이며, H-STYLE브랜드는 헤어펠리스에서 하지않는 두피.탈모에도 중점을 두는 대중 브랜드입니다.

2) 영업지역의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0.5k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당사는 귀하가 자신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데 대하여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7. 계약기간, 갱신. 연장. 종료. 해지. 수정

1) 가맹계약의 기간

- (1) 헤어펠리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입니다.
 (2) 계약갱신 시 계약기간은 (1)년씩 연장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및 해지 사유

갱신요구 거절 사유	가맹계약조항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9조1항의 1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9조1항의 2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9조1항의 3호
○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미용서비스 기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9조1항의 3호
○ 헤어펠리스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9조1항의 3호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9조1항의 3호
○ 기타 가맹본부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경우 또는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9조 3항

4) 계약 해지사유 및 그 절차

일반 해지 사유	가맹계약조항
○ 영업개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7조 1항-1
○ 상품대금 결제 및 로열티를 2회이상 연체 및 채무 불이행의 경우	47조 1항-2
○ 지정된 영업 장소 외에서 영업 활동들 하거나 상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47조 1항-3
○ 임의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거나 본부의 사전승인없이 가맹점을 이전한 경우	47조 1항-4
○ 본부가 공급하는 상품 이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47조 1항-5
○ 상호,상표,서비스표등 일체의 영업표지를 임의로 변경사용하여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47조 1항-6
○ 가맹점 운영 주요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47조 1항-7
○ 명의이전에 대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7조 1항-8
○ 고의 또는 과실로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키거나 훼손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47조 1항-9
○ 가맹점과 동종유사업종에 대한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47조 1항-10
○ 가압류,가처분,조세채납처분등을 받은 경우	47조 1항-11
○ 본 계약서상에서 정한 일체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47조 1항-12
○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47조 1항-13

귀하는 당사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 해지 사유	비고
1.당사가 계약기간 중에 귀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	귀하가 좌측 표에 기재된 “귀하의 계약해지사유”를 제외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합의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당사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2.당사가 귀하의 가맹점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부당하게 공급하지 않을 경우	

*귀하가 상기 비고란의 “합의해지”절차 없이 임의적으로 영업을 중단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 또는 귀하가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개월의 최고기간 없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해지 사유	가맹계약조항
○ 점주가 파산, 화의등의 신청이 있거나 , 회사정리 절차 및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48조 1항-1
○ 점주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처리되어 지급정지된 경우	48조 1항-2
○ 천재지변,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점주가 가맹사업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된 경우	48조 1항-3
○ 점주가 공연히 본부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본부의 영업비밀 및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48조 1항-4
○ 점주가 가맹사업의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 받고도 1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48조 1항-5
○ 점주가 법 제 1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조 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48조 1항-7
○ 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48조 1항-8
○ 점주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48조 1항-8
○ 점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영업을 연속하여 7일 이상 중단한 경우	48조 1항-9

○ 본부에게 파산,화의등의 신청이 있거나, 회사정리절차 및 강제 집행절차가 개시된 경우	48조 2항-1
○ 본부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최종적으로 부도처리되어 지급정지된 경우	48조 2항-2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수정 사유	가맹계약조항
○ 가맹사업법의 개정 및 기타 위생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의 경우	58조 1항
○ 가맹사업의 통일화를 위한 영업 방침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8조 2항

계약 수정의 절차는 본부가 2개월 전에 수정, 변경되는 사유 및 그 내용에 대해 통지하고 본부와 점주 상호합의하에 본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수정, 변경 전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

8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양도,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및 양도에 필요한 절차

당사는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개인 사정 등으로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새로운 가맹점사업자를 찾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시 사 들여 직영점 체제로 운영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매 조건	환매 절차	비고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운영권

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2개월 전)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 및 교육비 500만원 납부(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관리팀 (02-2655-0972)

* 당사는 귀하의 승인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승인 또는 거절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단 거절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본부 승인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위의 양도절차 내용을 참고]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대리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대리인이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	

9.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 지역 내에서] 귀하가 헤어펠리스와 동일한 업종의 영

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피머,컷,염색을 하는 미용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자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관리팀 (02-2655-0972)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헤어펠리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일8시간 이상 영업	주 5일이상 영업	영업시간 및 일수는 자율에 맡기지만 기준시간 이하는 본사와 협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자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헤어펠리스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2명 이상	직접 근무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4회/1개월	각 지역 살롱관리팀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압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2주일	본사 운영팀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3회/1주일	각 지역 살롱관리팀	

10.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헤어펠리스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시장조사 및 기획, 총괄, 집행 감독 및 전체 광고비의 20%	전체 광고비 X 80% / 가맹점 수	30일전 행사계획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브랜드 제고를 위해 참여해야 합니다.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별로 가맹점사업자당 실비 부담)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부담금 확정	월별 판촉 행사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본 계약상의 불이행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후 1년내 제23조(비밀유지의무), 제24조(경업 금지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을"은 위약금으로 각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3. "을"이 본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제50조 제1항, 제2항에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 외에 1일당 제18조 규정 가맹비의 10%를 위약벌로 지급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8]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총 프로세스	48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8	영업개시전 부담내역참조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7~46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 계약서 제공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기업은행 장한평지점에 가맹금 예치	D-29(1일)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최대한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노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해결 위원회	분쟁 해결 절차	비고
해당 없음	분쟁 해결 신청 → 접수 → 사실관계 조사 (15일 내외) → 상호간의 의견 조정 및 결정	

[상호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당사가 가맹점사업자

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상호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맹거래사의 자문 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Ⅶ .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 비용분담을 하지 않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인테리어 개선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원제도는 가맹본부의 경영사정 등에 의하여 가맹계약 기간 중이라도 지원여부 및 그 범위가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별도)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개점교육비	가맹점 오픈전.후 오페레이션 시스템 교육실시	가맹점의 매장면적, 예상매출액, 판촉인원 수에따라 지원	오픈일로부 2개월간 4회	100만원 한도	
영업용 비품지원	가맹점 오픈시	고객용 가운, 수건, 메뉴판, 음료메뉴판, 상담차트(단 가맹비, 보증금 전액 납부시 지원)	개점후 1개월 이내	80만원 한도	

관측지원	해당없음				
판매용 집기 무상대여	해당없음				
반품지원	해당없음				
마일리지	해당없음				
CRM	해당없음				
테스터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①	절 차 ^②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가맹점사업부 (02-2655-0972)
가맹점사업 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 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가맹점사업부 (02-2655-0972)
....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헤어팰리스]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창업자금 지원	중소상공인지원센터	최대 3천만원	신용 대출	임원 면담후 결정
프랜차이즈 운전자금 대출	기업은행	최대 3천만원	신용 대출	가맹본부 확인 신용등급 6이상, 매장운영자금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02-2655-0972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Ⅷ.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및 장소	최소시간	비용	필수여부
오픈교육 (개점전)	서비스 및 개점전에 필요한 제반교육	실습교육 (당사교육장)	1일간 10시간 (점주와의 협의 하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초 가맹금에 포함	필수교육
정기교육 (개점후)	트랜드교육 및 기술 교육	집체교육 (당사 교육장)	교육내용에 따라 상이	1시간 1만원	해외연수는 선택
특별교육 (개점후)	신서비스 고객제공방법	실습교육 / 롤플레이 (당사교육장)	교육내용에 따라 상이	1시간 1만원	필수교육
점주교육 (개점후)	경영전반,세무, 회계,마케팅,직원관리 교육	집체교육 (당사교육장)	교육내용에 따라 상이	최초 가맹금에 포함	필수교육

* 당사의 신서비스 개발은 가맹사업의 개선,고객니즈의 변화,시장상황의 변화 경쟁업체의 출현 등 주변환경에 동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당사의 신고객서비스 개발시 해당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헤어펠리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비고
오픈집중 교육	4일(합숙 포함)	최초가맹금에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월간정기 교육	점주 1일 / 매월	최초가맹금에 포함	매월 필수적으로 이수
	직원 1일 / 매월	실비 정산	매월 필수적으로 이수
특별 교육	2일 / 매년	실비 정산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비스/마인드교육	기술/상품교육	비고
점주교육	매월1회	분기별 1회	필수적으로 이수
종업원 교육	매월1회	매월1회	필수적으로 이수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오픈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4조에 따라 오픈일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6조에 따라 7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오픈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서비스 교육 불참 시 계약해지의 사유가 됩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점사업부(02-2655-0972)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종합상담과(02-2023-4010)** 또는 **가맹유통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무상황

아래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의하여 삭제되었습니다.